#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717

제출연월일 : 2018. 7. . 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○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시행되는 하남시 청소년 육성 개별 조례에 대하여 통합하고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한 「자랑스런 청소년 상(賞)」내 용을 포함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」, 「하남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」 및 「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」를 **「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」로 통합**
- 나. 제1장 총칙(안 제1조, 제2조)
- 다. 제2장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(안 제3조 ~ 제11조)
- 라. 제3장 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(안 제12조 ~ 제17조)
- 마. 제4장 하남시 차세대위원회(안 제18조 ~ 제24조)
- 바. 제5장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신설(안 제25조 ~ 제31조)
- 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-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  - 가. 청소년기본법 제3조, 제5조의2, 제11조, 제16조, 제27조
  - 나.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8. 5. 31 ~ 2018. 6. 19 (20일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관련협의사항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아동청소년과

# 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기본법」제5조의2, 법 제11조 및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

- 1. "청소년"이란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
- 2. "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"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.
- 3. "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" (이하 "지도위원" 이라 한다)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.
- 4. "하남시 차세대위원회" (이하 "차세대위원회" 이라 한다)란 법 제5조의 의2에 따라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말한다.
- 5. "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" (이하 "청소년상" 이라 한다) 이란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제17조와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

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.

#### 제2장 하남시 청소년육성위원회

- 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· 심의 한다.
  - 1.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  - 2. 중・장기 청소년 육성 정책방향의 설정
  - 3.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
  - 4.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
  - 5.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사항
  - 6.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  - 7. 하남시 청소년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
  - 8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- 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위원은 담당부서의 과장,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, 청소년담당 장학사가 되며, 위촉위원은 청소년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보호분야의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제5조(임기)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.
- 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출석발언)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,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·발 언하게 할 수 있다.
-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중 하남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하남시 청소년지도위원

- 제12조(지도위원의 위촉 등) ①시장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각 동별 10명 이내의 지도위원을 위촉 한다.
  - 1. 학부모, 교사, 청소년관련 단체 등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높은 자 중 거주지 동장, 재직 중인 학교의 장, 소속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  - 2.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- ② 청소년 지도활동에 관한 협의 및 정보교류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동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13조(임기)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제14조(지도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 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  - 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- 3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
  - 4. 성폭행 및 성추행에 따른 입건 사실이 있는 사람
- 제15조(지도위원의 임무)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.
  - 1.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
  - 2.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
  - 3.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
  - 4.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
  - 5.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·선도· 지도 및 정화활동
  - 6.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
- 제16조(중표교부)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- 제17조(지도위원 지원 등)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5조 각 호의 임무를 원할 한 수행을 위해 교육기회의 제공,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제4장 하남시 차세대위원회

- 제18조(기능)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  - 2. 지역청소년 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
  - 3. 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
  - 4. 관내 청소년수런시설 이용 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
  - 5. 도 및 다른 시·군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
  - 6. 기타 위원장 및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- 제19조(구성)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「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  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제20조(위촉 자격 등) ① 차세대위원회 위원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하남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.
  - ② 재학 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.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제21조(임기)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제2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다.
  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23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.
  - 1.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- 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④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한다.
- 제24조(수당 등) 차세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5장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

- 제25조(수상대상자)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.
- 제26조(수상부문)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대상 1명,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문화예술부문
  - 2. 스포츠부문
  - 3. 재능부문
  - 4. 효행부문
  - 5. 자원봉사부문
  - 6. 국제화부문
  - 7. 굳센생활부문

- 제27조(수상후보자 추천) ① 수상 후보자는 각 부문별로 학교장, 거주지 관할 동장, 청소년 관련 기관·단체 대표자, 봉사활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, 20명 이상의 시민이 연명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.
  -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  - 1. 추천서 : 별지 제2호서식
  - 2. 공적조서 : 별지 제3호서식
  - 3. 현지확인서 : 별지 제4호서식
  - 4. 그 밖에 공적관계 증명자료
- 제28조(심사·결정) 청소년상 심사·결정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.
- 제29조(시상 등) ① 청소년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되,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 - ② 대상 및 부문별 수상자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 등에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.
- 제30조(기록보존) 시장은 수상자 인적사항, 공적사항, 수상내역 등을 기록 한 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·운영 중인 지방청소년육성위원 회 및 청소년지도위원, 차세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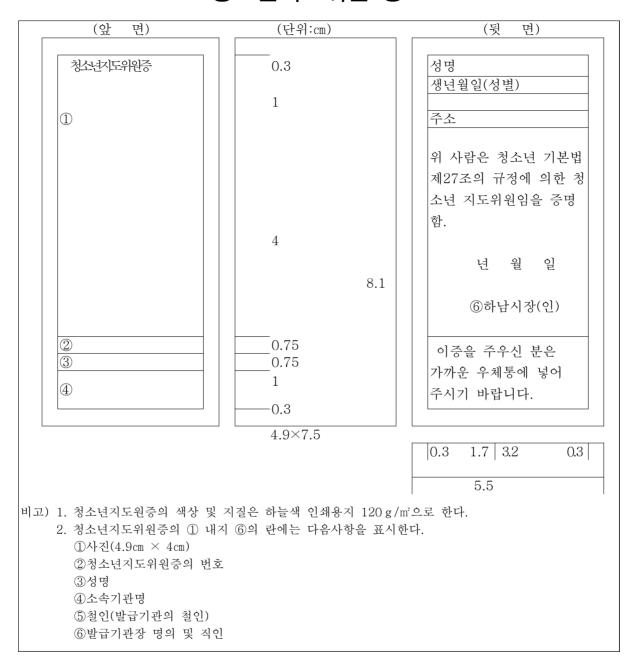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.

- 1. 「하남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」
- 2. 「하남시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」
- 3. 「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」

부서명		교육지원과	
입	부서장 직위·성명	교육지원과장 김희태	
· 안	팀장 직위·성명	대학청소년팀장 금미경	
사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금미경 (790-5477)	

### 「별지 제1호서식〕

# 청소년지도위원 증표



# 하남시 자랑스런 청소년 상 후보자추천

	성 명				
후보자	생 년 월 일				
	주 소				
위 /	사람을 년도	하남시 자랑스런 청소년	년 상 수상자로 추천		
하오니	심사 포상하여	주시기 바랍니다.			
첨부서	류 1. 공적조서	1부			
2. 현지확인서 1부					
3. 기타 공적관계 자료 1부					
		년 월	일		
		추천자	<b>(1)</b>		
하	남시장 귀하				

## [별지 제3호서식]

공 적 조 서						
① 성 명		(한자)				
② 생년월일 (성별)			- ③ 군번(군인의 경우)			
④ 국 적						
⑤ 주 소						
⑥ 직	업	-	7	) 소	속	
⑧ 직	위	⑨ 등급(	(직급·계급)	⑩ 근1	무기간(수공기간)	
① 공적요지(50자내외) ② 공적 분야 코드 -						
③ 추천훈2	<b>4</b>		(A) 추천	순위		
		조	사	자		
⑤ 소 👙	<u> </u>		16 직	위		
⑰ 직 ;	1		⑱ 성	명		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						
			년	월 일		
추천관 7	직위		성명		직위	

### [별지 제4호서식]

# 현 지 확 인 서

### 1. 대상자 인적사항

소속	직 위 (학 년)	성 별 ( 세)	성 명	비고

## 2. 현지확인사항

주 소	수공기간	년	개월
현지확인 내 용			
확 인 자 의 견			

# 3. 확인자

소 -	속	직	위	
직 급	그	성	명	<b>(1)</b>

### 관계법령 발췌서

#### ■ 청소년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청소년"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- 2. "청소년육성"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,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 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.
- 3. "청소년활동"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·교류활동·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청소년복지"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·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말한다.
- 5. "청소년보호"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·물건·장소·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- 6. "청소년시설"이란 청소년활동·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
- 7. "청소년지도자"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
  - 나.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
  - 다. 청소년시설,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- 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**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**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·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·협의·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·협의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

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<u>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</u>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- 제16조(청소년의 달)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.
- 제27조(청소년지도위원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·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

- 제17조(청소년의 달 행사)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 - 1. 청소년의 문화 · 예술 · 수련 · 체육에 관한 행사
  - 2.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
  - 3. 모범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
  - 4.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
  - 5.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